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민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678

발의연월일: 2024. 9. 5.

발 의 자:최민희·김남희·김용만

김준형 · 김현정 · 문진석

박민규 · 오세희 · 이병진

이워택 • 이정헌 의원

(119]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행정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·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수 또는 보강 등 정비, 재난 발생 위험요인의 제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,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재 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「행정대집행법」에 준용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또한,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, 그 밖의 질서 유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음.

그런데 이러한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응급복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경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

또는 점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며,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하여 안전조치 또는 응급복구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의 동의 없이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손실은 보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1조 및 제37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1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출입할수 있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사유・방법 및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안 전조치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
- ⑧ 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사업시행자"는 "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"으로 본다.

제37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응급복구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,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응급복구를 한 후 그 결과를통보할 수 있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사업시행자"는 "시장·군수·구청장"으로본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	제31조(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
치) ① ~ ⑤ (생 략)	치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
	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타인이
	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하여 안
	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
	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
	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
	동의가 없더라도 출입할 수 있
	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
	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
	지체 없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
<u>&lt;신 설&gt;</u>	또는 점유자에게 출입사유·방
	법 및 시기 등을 통보하여야
	한다.
	⑦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
	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6항에
	따라 안전조치를 위하여 타인
	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함으
<u>&lt;신 설&gt;</u>	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
	<u>여야 한다.</u>
	⑧ 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에
	관하여는 「공익사업을 위한

제37조(응급조치) ①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5항부터 제7 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사업시행자"는 "행정안전부장 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"으로 본다.

제37조(응급조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를 출입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응급복구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알리되, 미리 구두로 알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걸려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응급복구를 한 후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 항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하여 타인이 점 유하는 토지를 출입함으로써

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손실보상에 관하 여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」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 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사업 시행자"는 "시장·군수·구청 장"으로 본다. 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② (생략)